대학혁신지원사업운영규정 5-1-41

규정번호	5-1-41
제정일자	2019.2.25
최근개정	2025.12.1
개정차수	4차 개정
관리부서	혁신지원사업운영팀

[규정명칭 변경 2022.2.2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명지전문대학(이하 “우리대학”이라 한다)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이하 “혁신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추진·관리 및 국고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0.25.)

제2조(근거) 이 규정은 교육부의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근거한다.

제3조(규정의 적용범위) 이 규정은 혁신 사업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우리대학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4조 <삭제(2022.02.21.)>

제4조(사업기간) ① 사업기간은 협약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조번호변경 2022.02.21.)

② 제1항에 규정된 사업기간을 벗어난 사업은 집행할 수 없다. 단, 교육부장관 또는 사업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승인할 경우 예외로 한다.

제5조(사업단장) ①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의 장(이하 “사업단장”이라 한다)은 총장이 임명한다.(조신설 2022.02.21.)

② 사업단장은 사업전담조직의 관리 권한과 사업운영 책임을 갖고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을 총괄한다.

③ 사업단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진행과 관련한 우리대학의 각종위원회 및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다.

④ 혁신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고 부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 하며, 사업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5.12.1.)

제6조(사업전담조직)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 내에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조번호변경 및 개정 2022.02.21.)

②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22.02.21.)

1. 사업추진 기본계획 및 수행계획의 수립운영(개정 2022.02.21.)
2. 사업비 집행 및 관리
3.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사업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5. 사업 신청, 운영 및 성과 관리
6. 사업 자체평가계획 수립 및 운영
7.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8. 사업성과에 따른 공유 계획 수립 운영(신설 2022.02.21.)
9.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호번호변경 2022.02.21.)

③ 사업단에는 사업추진을 위해 약간 명의 전담인력(연구원 및 전담직원 등)을 둘 수 있고 총장이 임명한다.(항번호변경 및 개정 2022.02.21.)

제7조(사업계획 수립) ① 사업단은 학과 및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조번호변경 2022.02.21.)

② 사업단은 수립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행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위원회 및 총장의 승인을 얻어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2. 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
3. 사업개요 및 세부사업계획
4. 자체 사업운영지침 및 자체평가 계획
5.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6. 그 밖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사업단은 작성된 수행사업계획서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행사업계획서를 수정하고,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02.21.)

제8조(사업의 운영) 사업단은 관계 법령과 협약체결 내용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 성과 달성을 위하여 작성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조번호변경 2022.02.21.)

제9조(사업계획서 변경) ①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학혁신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정된 사업계획서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조번호변경 및 개정 2022.02.21.)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서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대학혁신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02.21.)

1. 세부 사업 항목의 변경 없이 세부사업 내에서의 예산 조정

2. 세부사업간 예산 조정 및 신규 사업 추가
3.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의 변경
4. 그 밖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0조(실적보고서의 제출) 사업단은 사업연도 종료 후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번호변경 2022.02.21.)

제14조 <삭제(2022.02.21.)>

제3장 위원회(장신설 2022.02.21.)

제11조(대학혁신운영위원회) ① 총장은 혁신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운영 및 사업비 집행 등의 혁신지원 사업관리를 위하여 대학혁신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조번호변경 및 개정 2022.02.2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실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산학협력처장, 사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사업추진과 관련된 내·외부 전문가 및 학생대표(재학생)를 포함하여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1.10.25.,2022.02.21)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개정 및 호신설 2021.10.25.)

1. 사업의 추진전략 및 계획의 수립
2. 사업 자체운영규정 및 운영세칙 제정
3. 사업 소요예산의 편성 및 재정회계 모니터링 관리(개정 2022.02.21.)
4. 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및 계획심의
5. 사업의 신청, 운영 및 성과관리
6. 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7. 성과평가, 협약해지 등 사업관리 및 성과관리 등에 관한 주요사항 자문 및 심의
8.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

④ 위원의 임기는 혁신사업 종료 시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당연직 위원의 경우 보직 재임기간을 임기로 한다.(개정 2022.02.21.)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02.21.)

제12조(사업비관리위원회) ① 사업비관리위원회는 혁신사업 사업비 관리를 위한 교내·외 전문가를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사업단장이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단, 심의·의결한 내용은 대학혁신운영위원회에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조신설 2022.02.2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사업예산편성에 따른 사업비 집행 관리

2. 세부 사업 항목의 변경없이 세부사업 내에서의 예산조정
3. 전체 예산의 10% 이내에서 세부사업간 예산조정
4. 사업비 집행 불가 항목에 따른 집행점검
5. 사업비 예·결산에 관한 사항
6. 사업비 운영지침의 수립 및 변경
7. 기타 사업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자체평가위원회) ① 혁신 사업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조명변경 2022.02.21.)

② 자체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자체평가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실무위원회) ① 혁신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혁신사업 실무위원회를 둔다.(조신설 2022.02.21.)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하고 사업추진부서의 팀장 또는 담당자로 20명 내·외의 내부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역할을 수행한다.

1. 연간 세부실행계획 수립·운영 협조
2.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의 변경
3. 사업수행 부서간 실무 협의 및 추진사항 정기 점검
4. 기타 세부사업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2(기타위원회) 혁신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 규정에 명시된 위원회 외에도 필요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1.]

제6조 <삭제(2022.02.21.)>

제7조 <삭제(2022.02.21.)>

제8조 <삭제(2022.02.21.)>

제4장 사업비의 편성 및 집행(장번호변경 2022.02.21.)

제15조(사업비의 구성)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는 혁신지원사업의 국고지원금으로 한다.(개정 2021.10.25., 조번호변경 및 개정 2022.02.21)

제16조(사업비의 관리) ① 사업비는 수행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집행하되 우리대학의 교비회계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조번호변경 2022.02.21.)

② 제1항에 따라 교비회계 내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고, 사업비의 입·출금과 이자의 관리를 위해서 별도 통장을 개설·관리한다.

③ 사업단장은 사업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관계 법령, 훈령 및 지침의 범위 내에서 우리대학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 에 따라 시행하고 자체적인 사업비 운영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개

정 2021.10.25.)

④ 사업 회계연도는 학교 회계연도와 동일하게 당해연도 3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로 하며, 국고지원금 지급전이라도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선 집행할 수 있다.(항 신설 2021.10.25.)

제17조(집행절차) ① 훈령 및 지침에 따라 모든 사업비는 사업단에서 관리하며, 사업비 통장에 입금된 국고지원금은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원인행위 없이는 집행할 수 없다.(개정 2021.10.25., 조번호변경 2022.02.21)

② 사업비는 법인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집행한다.

③ 훈령에 따른 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한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은 사업종료 후 5년으로 한다.

제18조(사업비 집행의 제한) 혁신사업 목적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하여 총장이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하고 법률·법령·규칙·훈령·자체운영 규정과 국고관리 및 집행요령, 한국연구재단에서 공시하는 집행기준 정의서에 준하여 집행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1.10.25., 조번호변경 2022.02.21.,개정 2024.4.1)

1. <삭제(2024.4.1.)>
2. <삭제(2024.4.1.)>
3. <삭제(2024.4.1.)>
4. <삭제(2024.4.1.)>
5. <삭제(2024.4.1.)>
6. <삭제(2024.4.1.)>
7. <삭제(2024.4.1.)>
8. <삭제(2024.4.1.)>
9. <삭제(2024.4.1.)>
10. <삭제(2024.4.1.)>

제19조(사업비 정산)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에 준하여 관련 서식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영수증은 반드시 발행일자·금액·발행처 등이 기재된 것에 한하여 인정된다.(조번호변경 2022.02.21.)

제19조의2(사업비 자체점검 및 회계감사) 사업비 집행의 타당성 및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단 및 유관 부서 전담직원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자체 점검과 외부 공인회계사의 자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1.]

제20조(기타) ①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 관련 법률·법령·규칙·훈령 및 우리대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조번호변경 2022.02.21.)

②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협약 체결 이전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등 대학혁신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0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18조, 제18조제1호~제10호)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5조제4항, 제14조의2, 제19조의2)